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8179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취득세 161,615,790원, 지방교육세 19,013,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가. 주식회사 나노(이하 '㈜나노'라고 한다)는 2007. 8. 30.경 [redacted]도시공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지정·고시된 '[redacted]일반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인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340-4 공장용지 7,4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753,405,500원에 매수하였고 2011. 4.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나노는 2011. 4.경 이 사건 토지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8. ㈜나노를 흡수 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에 따라, 취득세 161,615,790원, 지방교육세 19,013,6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4. 11. 3. 그에 인접한 [redacted]시 [redacted]면 [redacted]리 340-6 공장용지 2,917.9㎡에 합병되어 같은 리 340-6 공장용지 10,402.8㎡가 되었다(이하 합병 전의 같은 리 340-6 토지를 '합병 전 340-6 토지'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4. 7. 31.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6.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에 인접한 합병 전 340-6 토지에 위치한 원고의 본사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다. 이 사건 토지와 합병 전 340-6 토지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5,395,500원을 지출하여 위 토지를 정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정한 산업용 건축물 중 하나인 '주차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처분 시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된 면적은 3,569㎡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7,484.9㎡ 중 3,569㎡가 차지하는 비율인 47.68% 만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2. 22. [redacted]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맞닿은 합병 전 340-6 토지를 매수한 후 2011. 3. 2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합병 전 340-6 토지 위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0. 6.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3. 24.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원고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남서쪽 부분은 대체로 잡초가 제거되어 있고 토사가 평탄화되어 있으나 비포장 상태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잡초가 무성하다.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남서쪽 부분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곳에는 바닥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으며 외부 차량의 진출입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밖에 주차관리를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원고는 2010년경 장비비 3,690,5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남서쪽 부분을 평탄화하였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같은 조 제3항이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칭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8조, 제29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는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 제2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여기에서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데, 위 부대시설에는 주차장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나노를 흡수 합병하기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합병 전 340-6 토지에 위치한 원고의 본사 건물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평탄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 등 어떠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합병 전 340-6 토지와는 별개로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려면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에 합병 전 340-6 토지에 있는 건물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나노 또는 이를 포괄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유진

판사 박수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끝.